

2023년 출자·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72
----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11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의 규정에 따라, '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한 평창군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제안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3. 출연개요

(단위: 천원)

순번	출연기관	출연금	주요사항
계	8개	5,689,684	
1	강원연구원	50,000	평창군 중장기 비전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·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사업비 지원
2	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	428,495	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재단 운영비 출연
3	강원도관광재단	100,000	'로보컵아시아퍼시픽 2023' 성공개최를 위해 국제행사 유치·계획 업무 전담 실행기구에 사업비 출연
4	한국지방세연구원	4,630	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
5	평창장학회	2,530,000	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 출연
6	강원도관광재단	30,000	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및 종합적 관광서비스 제공, 지역관광 진흥 추진을 위한 재단 운영비 출연
7	평창문화도시재단	1,546,559	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재단 경영을 위한 운영비 출연
8	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	1,000,000	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및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단 운영비 출연

강원연구원 협력사업비 출연

주관부서	기획실	'23년 출연예상액	50,000천원
------	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: 재단법인 강원연구원(원장 현진권)
- 일반현황
 - 개원: '94. 9. 1.
 - 설립근거: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「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
 - 소재지: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
 - 조직: 4실, 1국, 6센터, 현원 58명(정원 69명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3년 출연예정금액 : 50,000천원
- '23년 주요사업 내용
 - 시군별 맞춤형 정책지원서비스 제공
 - 시군협력 정책 과제 1건, 현안 과제 2건 연구용역 수행
 - 네트워킹 사업 주관
 -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내외 외부 기관과의 가교 역할
 - 시군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, 포럼, 정책콘서트, 세미나 등 개최
 - 시군 1:1 전담 서비스 제공
 - 지역별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정책 자문 서비스 제공
 - 연구제안 행정사항 등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피드백
 - 정책동향 분석자료 정기 제공 및 공모사업 유치 지원
 - 정부 및 강원도 주간 주요이슈 및 동향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모음집 제공

- 정부 및 강원도 주간 주요이슈 및 동향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정기 제공
- 주요공모사업 캘린더 제공(연초)

□ 출연 필요성

- 강원도 대표 연구기관으로 강원도 중장기 비전 및 주요 정책개발 과제 수행에 따라 우리군과 연계된 핵심정책 개발이 가능하고
- 주요 정책·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·연구를 위한 정책 자문기구 필요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- 행정안전부

제13조(운영재원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- 「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 - 강원도

제4조(기금)

-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"강원연구원 육성기금"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시·군 및 그 외의 출연금,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.

제5조(운영경비)

-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② 도 및 시·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산출기초

- 출연액: 50,000천원
 - 공모사업 동향 분석자료 제공(월 1회),
 - 정책 연구과제(1건) 현안과제(2건) 용역 수행
 - 포럼·토론회 실시(필요시 1회), 수시과제·정책메모 수행(2건)
 - 전담 정책자문창구(코디네이터) 운영

□ 기대효과

- 군 역점사업 실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지원 강화
- 정책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 및 공모사업 유치 총력 지원
- 정책·현안 대응성 및 활용도 높은 조사·연구로 자문기능 강화
-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(강원포럼 등)

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운영비 출연

주관부서	올림픽체육과	'23년 출연예상액	428,495천원
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 :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(이사장: 심재국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 : '21. 8. 26.
 - 설립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「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 - 소 재 지 :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-27
 - 조직구성
 - (이사회) 8명(이사장, 이사 5, 감사 2)
 - (사무국) '22년 2팀 6명 ⇨ '23년 2팀 9명 ⇨ '24년 3팀 14명
 - 기본재산 : 1억원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3년 출연금액 : 428,495천원('22년 당초 출연액 434,800천원)
- '23년 주요사업 내용
 - 재단 운영 및 올림픽 유산 관련 보조사업 수행

□ 출연 필요성

- 올림픽 유산사업의 다변화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재단 운영 필요
- 지속가능한 유산사업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 도모

□ 출연근거

- 「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14조(운영재원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
3.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등

제16조(재정지원) 군수는 재단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□ 산출기초

- 출연금 : 428,495천원

○ 평창평화센터 운영비: 428,495천원

가. 인건비: 233,715천원

- 일반직 4명(6급 1, 7급 1, 9급 2): 219,315천원
- 파견직 3명: 14,400천원

나. 재단운영비: 144,080천원

- 사무관리비: 112,400천원
- 공공운영비: 8,400천원
- 수선유지교체비: 7,200천원
- 업무추진비: 12,000천원
- 관서업무비: 3,080천원
- 포상금: 500천원
- 법인세: 500천원

다. 여비: 39,200천원

- 국내여비: 25,200천원
- 국외여비: 14,000천원

라. 교육훈련비: 6,100천원

마. 행사·홍보비: 2,000천원

바. 자산취득비: 3,400천원

□ 출연시 기대효과

- 본격적인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
-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 확보

강원도관광재단 사업비 출연

- 국제행사(로보컵아시아퍼시픽 2023) 개최 지원 -

주관부서	올림픽체육과	'23년 출연예상액	100,000천원
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 :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(대표이사 강옥희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 : 2020. 10. 13.
 - 설립근거 : 지방출자·출연법 제4조 및 민법 제32조
 - 소재지 :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89, 세종캐슬빌딩 3층(퇴계동)
 - 조직구성 : 1본부 3실 9팀(운영인력 35명)
 - 기본재산 : 50,000천원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3년 출연금액: 100,000천원
- '23년 주요사업 내용: 국제행사(로보컵아시아퍼시픽 2023) 개최 지원
 - 행사명: 강원도관광재단 국제행사 개최 지원
(로보컵아시아퍼시픽 2023)
 - 행사기간: 2023. 11. 22.(수) ~ 25.(토), 4일간
 - 사업비: 256백만원(군 100, 자부담 156)
 - 장소: 대관령면 일원(용평리조트 및 알펜시아리조트)
 - 규모: 3,000명(국내·외 선수단 1,000, 관계자 2,000)
 - 내용: 국내·외 초/중/고/대학생, 일반인, 교수 등이 참가하여
분야별 로봇경진대회 및 시상식 등 개최
 - 주관: (재)강원도관광재단

□ 출연 필요성

- 평창군 MICE 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기관 강원도관광재단과 협력 체계 구축
- '로보컵아시아퍼시픽 2023'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 분담

□ 출연 근거

- 「강원도 관광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「강원도 관광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11조(운영재원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
3.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
4.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에 수입금 등

제13조(재정지원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- 「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」

「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」

제4조(재정지원) 평창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□ 산출기초

- 출연금 : 100,000천원

○ 사업 및 운영비 : 100,000천원

- F&B(식사&음료) : 15,000천원
- 숙박 : 20,000천원
- 시설설치비 : 65,000천원

□ 출연시 기대효과

- 평창군 MICE 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 유치·개최 업무 전담 실행기구인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에 사업비 출연
- 9개국 약 3,000여명이 참가하게 될 본 행사 개최를 통해 MICE 명품도시 평창군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연계 관광 프로그램(스키·스노보드 체험 등)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
- 대규모 국제행사(로보컵아시아퍼시픽 2023)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사업비 출연(출연금 100,000천원)

지방세발전기금 출연

주관부서	세정과	'23년 출연예상액	4,630천원
------	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: 한국지방세연구원 (원장 배진환)
- 일반현황
 - 설 립 일: 2011. 2. 28.
 - 설립근거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
 - 소 재 지: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
 - 조직구성: 이사회, 기획조정실, 연구본부, 교육본부, 경영지원실
 - 운영인력: 77명(이사장 포함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3년 출연예정금액: 4,630천원
 -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
- 사용용도: 인건비, 연구사업비, 경상운영비, 시설비 등

□ 출연 필요성

- 지방소비세·소득세 확대 발전, 신규세원 발굴 준비
-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,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
-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

□ 출연근거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

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동하여야 한다.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2

□ 산출기초

○ 출연금 4,630천원 = 38,586,288천원 × 0.00012

- 전전년도(21년)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2(시행령 제94조)

※ 개정된 내용의 시행령 공포(2021.2.19)

□ 기대효과

- 지방세 신세원 발굴, 지방소득·소비세 발전 등 지방세제 이슈에 대한 전문 연구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
- 지방의 관점에서 경제·사회 현상을 분석·연구하여 지방재정·세제의 역할과 방향 도출에 기여
-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배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를 통하여 지방세의 비중 제고에 기여 등

(재)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

주관부서	인재육성과	'23년 출연예상액	2,530,0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: 재단법인 평창장학회(이사장 심재국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: 1990. 8. 10.
 - 설립근거: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- 소재지: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(평창군청 인재육성과)
 - 조직구성: 이사회 10명(이사장 1, 이사 7, 감사 2)
 - 재산현황: 8,822백만원(기본재산 8,169백만원, 보통재산 653백만원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3년 출연금액: 2,530,000천원('22년 당초 출연액 1,030,000천원)
- '23년 주요사업 내용
 -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

□ 출연 필요성

- 민선8기 공약사업인 '대학생 월세·기숙사비 지원, 등록금 전액 지원' 중 2022년 등록금 전액 지원 실행
- 군민들의 자발적 기탁에 의해 장학기금이 확충되고 있으나, 장학금 지원액보다 금액이 적어 군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
-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여 지역 학생,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감소하고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증액 출연이 필요함

□ 출연근거

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○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설립허가 기준)

① 주무 관청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, 사단법인은 회비·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(財源)의 수입(이하 각 “기본재산”이라 한다)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.

○ 「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장학기금의 출연)

① 군수는 장학회의 재원조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산출기초

- 사업비: 2,904,000천원(출연금 2,530,000 / 이자수입·기부금 374,000)
 - 중고생 장학금: 70명 × 1학기 × 600천원 = 42,000천원
 - 대학생 장학금: 530명 × 2학기 × 2,700천원 = 2,862,000천원

□ 출연시 기대효과

- 장학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장학금 수혜범위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으로 관내 인구증가 기여

강원도관광재단 운영비 출연

주관부서	관광문화과	'23년 출연예상액	30,0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 : (재)강원도관광재단 (대표이사 강옥희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 : 2020. 10. 13.
 - 설립근거 : 지방출자·출연법 제4조, 민법 제32조
 - 소재지 : 춘천시 안마산로 89, 세종캐슬빌딩 3층(퇴계동)
 - 조직구성 : 1본부 3실 9팀(35명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3년 출연예정금액 : 30,000천원('22년 당초 출연액 30,000천원)
- '23년 주요사업 내용
 - 관광정보 조사·분석 및 관광진흥 네트워크 구축
 - 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추진 및 관광콘텐츠 상품 개발
 - 강원관광 통합 홍보 마케팅
 - 국제회의 유치·지원 등 적극 협력 및 공동 대응

□ 출연 필요성

- 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및 종합적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·시군 통합형 관광 전문기관으로서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
- 도내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강원도 관광재단을 관내 관광산업의 전략적 추진 기구로 활용하여 지역관광 진흥 및 경쟁력 강화 도모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제4조

□ 산출기초

- 18개 시·군 각 30,000천원 균등 부담

□ 출연 기대효과

- 급변하는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시·군간 적극 협력 및 공동 대응
- 도내 지역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관광진흥 교류 통합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□ 「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」

제4조(재정지원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평창군문화도시재단 출연

주관부서	관광문화과	'23년 출연예상액	1,546,559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 : 재단법인 평창문화도시재단(이사장 김도영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 : 2012. 11. 30.(도 설립허가 2012.11.21.)
 - 설립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「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」
 - 소재지 :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54, 2층
 - 조직구성 : 23명(이사장 1, 이사 14, 감사 1, 직원 7)
 - 기본재산 : 1억원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3년 출연금액 : 1,546,559천원('22년 당초 출연액 1,743,993천원)
- '23년 주요사업 내용
 - 문화예술 육성 및 문화체험 지원(찾아가는 공연·전시·시네마 등)
 - K-POP 아카데미·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

□ 출연 필요성

- 지역주민 문화사업, 강원트리엔날레, 지역문화 사관학교 및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대행 등 평창 문화예술의 중장기적 로드맵 가동
-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등의 문화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로 생활문화 예술 활성화 및 문화복지 강화
-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허브 기관으로의 도약과 특성화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·문화·교육 욕구 충족
- 지역민의 창작기반 조성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

□ 출연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」 제6조

□ 산출기초

- 출연금 : 1,546,559천원

(단위: 천원)

1. 평창문화도시재단 운영비 695,359

가. 인건비 495,855

- 1) 정원 9명(사무국장 파견 1, 재단직원 8)
- 2) 재단직원 8명 구성(문화도시국장 1, 팀장 2, 사원 5)

나. 기본경비 123,556

- 1) 사무관리비 및 임차료 등 95,916
- 2) 공공운영비 27,640

다. 여비 및 기타경비 65,948

라. 자산취득비 10,000

2. 평창문화도시재단 사업비 851,200

가. 공연사업 325,000

- 1)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100,000
- 2) 평창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60,000
- 3) 평창청소년 K-POP 아카데미 운영 85,000
- 4) 찾아가는 공연 40,000
- 5) 찾아가는 시네마 40,000

나. 전시사업 306,200

- 1) 찾아가는 전시운영 40,000
- 2) 전시사업 활성화 266,200

다. 지역주민 문화사업 220,000

□ 출연 기대효과

- 지역주민 문화사업을 통한 군민 거버넌스 활성화
- 평창군 문화예술교육, 창작지원 등을 통한 군민 문화역량 강화
- 군민 세대교류 및 일상축제, 공연전시 등으로 문화복지 실현
- 평창문화도시재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양질의 문화행정서비스 제공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□ 「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」

제5조(재산) 재단의 재산(제3회에서 “재산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군의 출연금

제6조(출연 등) ① 군수는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출연

주관부서	농산물유통과	'23년 출연예상액	1,000,000천원
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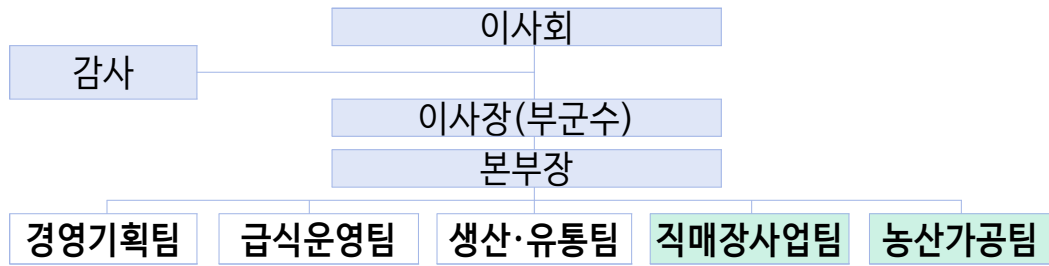
- 법 인 명 : 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(이사장 김영균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 : '21. 8. 27.
 - 설립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민법」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 - 소재지 :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220
 - 조직 : 3팀 13명('21년) / 3팀 16명('22년) / 5팀 28명('23년 이후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3년 출연예정금액 : 1,000,000천원
- '23년 주요사업 내용
 -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수도권 대량 소비처 물류허브 구축
 - 로컬푸드 직매장 및 로컬푸드 레스토랑, 꾸러미 사업 등
 - 유통·납품 식자재의 전처리(소분, 소포장) 및 한약재유통센터 운영
-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
 - 이사회 : 9명(이사장 1, 이사 6, 감사 2)
 - 운영인력 : (1단계) 3팀 13명 → (2단계) 3팀 16명 → (3단계) 5팀 28명

단계별	조직	인력구성(기간제 포함)
1단계 (`21년)	3팀 13명	▶ 본부장(1), 경영기획팀(4), 급식운영팀(3), 생산관리팀(5) ※ 경영기획팀(6급, 8급) : 공무원(2명) 파견 ※ 생산관리팀 : 농가관리 및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실무지원직(3명) 포함
2단계 (`22년)	3팀 16명	▶ 본부장(1), 경영기획팀(4), 급식운영팀(6), 생산관리팀(5), ※ 경영기획팀(6급, 8급) : 공무원(2명) 파견 ※ 급식운영팀 : 검수, 클레임 처리 실무지원직(1명), 기간제근로자(2명) 포함 ※ 생산관리팀 : 농가관리 및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실무지원직(3명) 포함
3단계 (`23년 이후)	5팀 28명	▶ 본부장(1), 경영기획팀(3), 급식운영팀(10), 생산·유통팀(3), 직매장사업팀(8), 농산가공팀(3) ※ 경영기획팀(6급, 8급) : 공무원(2명) 파견 ※ 급식운영팀 : 검수, 클레임 처리 실무지원직(1명), 기간제근로자(6명) 포함 ※ 직매장사업팀 :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실무지원직(6명) 포함

- 조직도



- 정원 및 주요업무

· (1단계 : 2021년) 3개팀 13명(경영기획팀, 급식운영팀, 생산관리팀)

조직구분	일반직	파견 (공무원)	실무 지원직	기간제	합계	담당업무
합계	8	2	3	-	13	
본 부 장	1	-	-	-	1	재단법인 업무 총괄
경영기획팀	2	2	-	-	4	기획, 인사, 회계, 홍보 및 마케팅
급식운영팀	3	-	-	-	3	학교급식, 수발주, 집배송, 검수, 소분관리
생산관리팀	2	-	3	-	5	농기조직화 및 관리, 계약재배, 직매장 관리

· (2단계 : 2022년) 3개팀 16명

조직구분	일반직	파견 (공무원)	실무 지원직	기간제	합계	담당업무
합계	8	2	4	2	16	
본 부 장	1	-	-	-	1	재단법인 업무 총괄
경영기획팀	2	2	-	-	4	기획, 인사, 회계, 홍보 및 마케팅
급식운영팀	3	-	1	2	6	학교급식, 수발주, 집배송, 검수, 소분관리
생산관리팀	2	-	3	-	5	농기조직화 및 관리, 계약재배, 직매장 관리

· (3단계 : 2023년) 5개팀 28명(직매장사업팀, 농산가공팀 신설)

조직구분	일반직	파견 (공무원)	실무 지원직	기간제	합계	담당업무
합계	13	2	9	4	28	
본 부 장	1	-	-	-	1	재단법인 업무 총괄
경영기획팀	1	2	-	-	3	기획, 인사, 회계, 홍보 및 마케팅
급식운영팀	3	-	3	4	10	학교급식, 수발주, 집배송, 검수, 소분관리
생산·유통팀	3	-	-	-	3	농기조직화 및 관리, 계약재배, 농산물 유통
직매장사업팀	2	-	6	-	8	로컬푸드 직매장(로컬커피, 레스토랑 등) 운영
농산가공팀	3	-	-	-	3	한약재유통센터 및 잡곡가공센터 운영, 1차 전처리 및 가공업무 관리

○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(1월 ~ 10월말 기준)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용	'21년 매출액	'22년 매출액	비 고 (수수료)
합계		1,824	11,151	168
친환경 학교급식사업	관내 유·초·중·고 학교급식 식자재 현물납품	-	1,945	없음
로컬푸드 직매장 운영	로컬푸드 직매장(평창상휴게소) 운영	270 (대관령원협)	596	10~20%
온·오프라인 농산물유통	성필립보 농산물 납품 및 유튜브 주말장마당	-	293	5%
대형소비처 농산물 위탁 판매	강원농협연합 - 대관령원예농협 농산물(배추) 위탁 판매	-	4,500	0.3~0.5%
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	경기도 학교급식용 농산물 시범 공급	-	187	5%
한약재유통지원센터 시설 운영	당귀, 일천궁 계약재배 물량 선별·검수·가공·유통	1,554	3,630	1%

□ 출연 필요성

- 평창 먹거리계획(푸드플랜)의 실행 주체인 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조기 정착 지원을 통해 먹거리 공공재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 가동
- 재단법인 설립 운영을 통한 친환경 학교급식, 로컬푸드 기획생산 관리,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「2022년 전국 지역먹거리(로컬푸드)지수」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으로 그 활동을 인정받고 있음.
(’20년 E등급 → ’22년 B등급)
- 로컬푸드와 연계한 학교급식에 지역의 신선하고 우수한 먹거리 제공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 필요

□ 출연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제18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□ 산출기초

- 출연금 : 1,000,000천원
- 세부 산출내역 : 붙임 참조

□ 출연시 기대효과

- 평창 푸드플랜의 실행 주체인 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조기 정착을 통해 먹거리 공공재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기여
- 관내 중소가족농, 고령농, 귀농·귀촌 농업인의 기초소득 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
- 재단법인을 통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운영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인력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붙임 : 2023년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사용계획 1부. 끝.

[붙임]

<2023년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사용계획>

2023년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사업예산(수익)

(단위 : 천원)

구분	관	항	세항	목	예산액 (천원)	전년도 당초예산액	증감 (A)-(B)
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(수익)					3,450,420	3,250,420	200,000
[100] 자본적수입					50,000	100,000	Δ50,000
	[180] 유보자금				50,000	100,000	Δ50,000
		[181] 순세계잉여금			50,000	100,000	Δ50,000
		[181-01] 순세계잉여금			50,000	100,000	Δ50,000
		○ 자치단체 출연금 전년도 집행잔액			50,000	100,000	Δ50,000
[600] 사업수익					3,400,420	3,150,420	250,000
	[610] 영업수익				1,295,000	1,150,000	145,000
		[648] 출연금수익			1,000,000	1,000,000	0
		[648-02] 자치단체출연금수익			1,000,000	1,000,000	0
		○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			1,000,000	1,000,000	0
		[661] 기타영업수익			295,000	150,000	145,000
		[661-19] 기타영업수익			295,000	150,000	145,000
		○ 계약재배, 대량 소비처 농특산물 공급 수수료			45,000	30,000	15,000
		○ 온.오프라인 직거래 판매 수수료			40,000	30,000	10,000
		○ 한약재 유통센터 운영 수수료			60,000	50,000	10,000
		○ 로컬푸드 판매장(직영) 수수료			150,000	40,000	110,000
	[670] 영업외수익				2,105,420	2,000,420	105,000
		[673] 정부보조금수익			2,105,420	2,000,420	105,000
		[673-02] 자치단체보조금수익			2,105,420	2,000,420	105,000
		○ 친환경 급식지원			1,469,067	1,469,067	0
		○ 친환경(우수) 식재료 지원			111,453	111,453	0
		○ 친환경(쌀) 차액지원			40,000	40,000	0
		○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			484,900	379,900	105,000

2023년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사업예산(지출)

(단위:천원)

구분	관	항	세항	목	예산액 (천원)	전년도 당초예산액	증감 (A)-(B)
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(지출)					3,450,420	3,250,420	200,000
[700] 사업비용					3,450,420	3,250,420	200,000
[710] 영업비용					3,450,420	3,250,420	200,000
[722] 대행사업비					2,105,420	2,000,420	105,000
[101] 인건비					168,870	107,346	61,524
[01] 보수					168,870	107,346	61,524
[201] 일반운영비					136,000	136,000	0
[01] 사무관리비					42,400	42,400	0
[02] 공공운영비					93,600	93,600	0
[206] 재료비					1,620,520	1,620,520	0
[01] 일반 재료비					1,620,520	1,620,520	0
[212] 복리후생비					20,130	12,654	7,476
[01] 사회보험부담금					20,130	12,654	7,476
[301] 일반보상금					69,900	69,900	0
[13] 기타보상금					69,900	69,900	0
[321] 민간사업지원금					90,000	54,000	36,000
[754] 일반관리비					1,306,841	1,168,204	138,637
[101] 인건비					785,143	517,871	267,272
[01] 보 수					785,143	517,871	267,272
[108] 퇴직연금 부담금					42,000	50,722	Δ8,722
[108] 퇴직연금 부담금					42,000	50,722	Δ8,722
[201] 일반운영비					230,520	164,280	66,240
[01] 사무관리비					78,320	79,600	Δ1,280
[02] 공공운영비					152,200	84,680	67,520
[202] 여 비					41,400	36,000	5,400
[01] 국내여비					41,400	36,000	5,400
[203] 업무추진비					12,000	12,000	0
[07] 사업업무추진비					12,000	12,000	0
[204] 직무수행경비					21,240	16,020	5,220
[01] 직급보조비					21,240	16,020	5,220
[206] 재료비					1,000	0	1,000
[01] 일반 재료비					1,000	0	1,000
[207] 연구개발비					20,000	45,000	Δ25,000
[02] 전산개발비					20,000	45,000	Δ25,000
[212] 복리후생비					101,258	83,511	17,747
[01] 사회보험부담금					81,886	63,811	18,075
[02] 기타복리후생비					19,372	19,700	Δ328
[213] 교육훈련비					10,000	5,000	5,000
[213] 교육훈련비					10,000	5,000	5,000
[214] 수선유지교체비					10,000	2,000	8,000
[05] 수선유지비					10,000	2,000	8,000
[216] 행사홍보비					25,000	56,000	Δ31,000
[01] 행사운영비					10,000	20,000	Δ10,000
[03] 광고선전비					0	6,000	Δ6,000
[04] 판매 촉진비					15,000	30,000	Δ15,000
[217] 관서업무비					6,880	4,400	2,480
[01] 정원가산업무비					2,080	800	1,280
[02] 부서업무비					4,800	3,600	1,200
[220] 위탁관리비					0	125,000	Δ125,000
[220] 위탁관리비					0	125,000	Δ125,000
[303] 포상금					400	400	0
[01] 포상금					400	400	0
[405] 자산취득비					0	50,000	Δ50,000
[01] 자산취득비					0	50,000	Δ50,000
[800] 예비비					38,159	81,796	Δ43,637
[801] 예비비					38,159	81,796	Δ43,637
[801] 예비비					38,159	81,796	Δ43,637